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1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8.

발 의 자: 박완수·양금희·이명수

김기현 • 권영세 • 김용판

조경태・이 영・정희용

백종헌 • 이채익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수검을 통해 시력, 운동능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, 2종 면허 소자자의 경우 70세 이상만 적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이 같은 규정은 과거 1종 면허는 사업용, 2종 면허는 비사업용으로 구분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2007년 동법 개정을 통해 2종 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차량의 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초 법규정의 취지가 일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.

특히, 최근 5년간 면허 종별 1만명당 교통사고 가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1종 면허 소지자 관련 사고율은 5.25% 감소한 반면, 제2종 면허 소지자 관련 사고율은 3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면허 종별로 면허갱신 요건 등을 차등하는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다수의견임.

이에 2종 면허 소지자도 1종 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10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수검하도록 해서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(안 제8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제2항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 중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①	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	②
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	
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	
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	
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	<u>.</u>
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	
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	
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	
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른 보	
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	
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	
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	7
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	
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	
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	
날부터 1년(원동기장치자전	
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	
6개월로 하되, 제46조를 위반	
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	

우에는 1년). <u>다만</u>, 제93조제 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 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 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8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87조(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기 적성검사) ① (생 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(定期) 적성검사(適性檢査)를 받아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
 - ③ ④ (생 략)

- 8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87조(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기 적성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
- ③ ④ (현행과 같음)